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9. 김남근의원 등 35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5.)

상정 ·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2.)

상정

–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3.)

상정

○ 제42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2차 전체회의(2025. 7. 3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남근의원)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

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 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김현정의원안은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¹⁾ 등을 적용하는 대상에

‘등록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고(김현정의원안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김남근의원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김남근의원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김남근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현행	김남근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 ----- ----- ----- -----. ④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 ----- ----- ----- ----- ----- ----- ----- ----- ----- ----- ----- -----. 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현행	김남근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신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현행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금융업자등’)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본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하여 경영지도기준²⁾을 정할 수 있으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

금융감독원은 경영지도 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3항3).

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4. 10. 15.>

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7.>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2.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6. 10. 5.>

5. 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 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또한, 금융위원회는 i) ‘허가’ 전자금융업자⁴⁾등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42조제3항), ii) ‘허가’ 전자금융업자등의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음(법 제42조제4항).

□ 그런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을 겸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등록 전자금융업자, 특히, 매출규모나 이용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판매자의 피해가 큰 대형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등록 전자금융업자등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김남근의원안은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김현정의원안은 모든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경영지도기준 미충족시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적

하다.

4)현행법상 허가 전자금융업으로는 전자화폐업이 있으나, 현재 전자화폐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없음.

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김남근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대상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등록 전자금융업자
요건 및 조치사항	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경영지도기준 미달 또는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지도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경영개선 시정조치)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적기시정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관련 조치 및 제재 준용
위반시 제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법 제43조제2항 위반)

□ 개정안의 내용 중 첫째, 경영개선 시정조치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등록 전자금융업자로 할 것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등록 전자금융업자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개선조치 확대의 목적, 대상 확대에 따른 규율 부담, 대상에 적용되는 조치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등록 전자금융업자는 2023년말 기준 163개이며, 이 중 김남근의원안에 따른 대상(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는 47개사⁵⁾임.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등록 전자금융업자]

	대상 업무	업체수
허가 전자금융업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없음
등록 전자금융업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5-1) 결제대금예치업무(Escrow) 5-2) 전자고지결제서비스 ※ 은행, 신용카드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은 등록 대 상에서 제외	163개 ^{주1)}

주 1) 순 업체수(한 업체가 복수업종을 겸영하더라도 1개로 계상)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김남근의원안에 따를 경우 대상이 한정되어 대상 확대에 따른 부담이 적고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자금융업자는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116개사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김현정의원안은 현행법이 금융회사 및 허가 전자금융업자 뿐 아니라 모든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

5) 이 중 2023년 말 기준으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는 5개사임.

당한 측면이 있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소비자·판매자 영향을 고려하여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에게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치 내용을 금융회사나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 이 법에 따른 허가 요건 및 등록 요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임.

□ 둘째,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시정조치’(법 제42조제3항)와 ‘적기시정조치’(법 제 42조제4항)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전업주의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달리 겸업주의가 적용되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경영개선 시정조치와 적기시정조치 비교]

구분	경영개선 시정조치(§42③)	적기시정조치(§42④)
요건	·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64조부터 제71조에서 조치단계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주1)} ·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내용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이익배당의 제한	· (경영개선권고)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경영개선요구)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정지, 합병, 제3자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 수립 · (경영개선명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조치 미준수시	업무정지 가능 업무정지명령 위반시 등록취소 가능	· (경영개선권고 위반) 경영개선요구 가능 · (경영개선요구 위반) 경영개선명령 가능 · (경영개선명령 위반) 허가의 취소, 임원의 해임 권고 등 가능

주 1) 【참고자료】 참조
 자료: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경우, 경영 중인 해당 전자금융업무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유업무를 가진 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PG업을 겸영하고 있는 지마켓(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코레일네트웍스(철도서비스 전문 공공기관), 골프존(골프 관련 서비스업체) 등에 대해서 부수업무인 PG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이유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등이 가능해지는 결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현행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무의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없음